

#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영주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11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2년 03월 10일

발 의 자 : 최영주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경만선, 김소영, 김춘례,  
김태호, 노승재, 신원철,  
안광석, 오한아, 유 용,  
이중환, 최기찬, 황규복  
의원(12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예술인 복지법」 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호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, 「예술인 복지법」에 따라 축제 주최자와 참여 예술인간의 ‘문화예술용역’에 대한 계약체결시 고용보험료 납부, 계약의 공정성 확보 등 축제 참여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 노력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.
- 또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 정비를 통해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의 책무에 “축제 참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” 조항 신설 (안 제3조제2항).
- 나.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조항 정비(안 제7조제1항~제7조3항, 제9조제1항).
- 다. 실무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 조문 정비(안 제12조제5항).
- 라. 축제 개최를 위한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규정함(안 제17조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예술인 복지법」, 「고용보험법」,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문화예술진흥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##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를 “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「예술인 복지법」 제4조에 따라 축제에 참여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”을 “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당연직 위원은 문화본부장, 관광체육국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2명,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,”를 “당연직 위원은 문화본부장, 관광체육국장,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

소속 의원 2명,”으로 한다.

제7제3항 중 “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”에서 “당연직 위원의 임기는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인 공동위원장이 된다”를 “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축제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한다”로 한다.

제1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⑤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제17조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(축제 개최를 위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관리) ① 조례 제 16조에 따라 시가 지원하는 축제를 개최하는 자 또는 그 축제 개최를 대행하는 문화예술기획업자 등 (이하, “축제 주최자”라 한다)은 축제개최를 위하여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시 「예술인 복지법」에 따라 서면에 의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여야 하며, 참여 예술인에 대하여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- ② 축제 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상대방에 대해서 「고용

보험법」 및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하고 보험료 납부 등을 해야 한다.

③ 축제 주최자는 관련 법령 및 협약에 따른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고, 참여예술인에게 지급한 보조금 사용 세부내역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축제의 주최자는 성희롱, 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여야 한다.

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시장의 책무) <u>서울특별시장</u> 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<u>서울특별시장</u> 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시장은 「예술인 복지법」 제4조에 따라 축제에 참여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7조(축제위원회의 구성) ① <u>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(이하생략)</u></p> <p>② <u>당연직 위원은 문화본부장, 관광체육국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2명,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, 서울연구원 소속 축제분야 선임연구위원급 이상 연구원 1명과 축제감독, 대학교수 등 문화예술 또는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u></p> <p>③ <u>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</u></p>	<p>제7조(축제위원회의 구성) ① <u>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(이하 현행과 같음)</u></p> <p>② <u>당연직 위원은 문화본부장, 관광체육국장,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</u>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<u>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2명, 서울연구원 소속 축제분야 선임연구위원급 이상 연구원 1명과 축제감독, 대학교수 등 문화예술 또는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u></p> <p>③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하되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<u>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제9조(위원장 등) ① <u>위원장은 서울시 행정(1)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장 1명으로 하며,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②~④ (생략)</p> <p>제12조(실무위원회) ① (생략)  <u>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인 공동위원장이 된다.</u></p> <p>③~④ (생략)</p> <p>⑤ <u>실무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-----  --, <u>당연직 위원의 임기는</u> -----,  -----,  -----.</p> <p>제9조(위원장 등) ① <u>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②~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실무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  <u>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축제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한다.</u></p> <p>③~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17조(축제 개최를 위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관리) ① <u>조례 제16조에 따라 시가 지원하는 축제를 개최하는 자 또는 그 축제 개최를 대행하는 문화예술기획업자 등(이하, “축제 주최자”라 한다)은 축제개최를 위하여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시 「예술인 복지법」에 따라 서면에 의한 공정한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제17조~제21조</u> (생략)</p>	<p><u>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여야 하며, 참여 예술인에 대하여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</u></p> <p><u>② 축제 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상대방에 대해서 「고용보험법」 및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하고 보험료 납부 등을 해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축제 주최자는 관련 법령 및 협약에 따른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고, 참여예술인에게 지급한 보조금 사용 세부내역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④ 축제의 주최자는 성희롱, 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제18조~제22조</u> (현행 제17조부터 제21조와 같음)</p>